#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3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진성준·김성환·강선우

박 정・박홍배・박홍근

이용우 · 박해철 · 김 윤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지난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아울러 지자체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역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7조의2및 제30조제4항 신설).

#### 법률 제 호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나. 국가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 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라.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5인 이상
- 2.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나. 유역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 다.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라.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5인 이상
-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 야 하고,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 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 회의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안건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 제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 다)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 1. 평가 항목 및 기준
  - 2. 평가 대상
  - 3. 평가 방법
  - 4. 평가 일정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

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역물관리위 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
			출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국가물관리위원회 분과위
			원회 위원장
			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u>위원</u>
			라.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u>위원 5인 이상</u>
			2.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유역물관리위원회 분과위
			원회 위원장
			<u>다.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u>
			기 레이크레이크레 메크
			라.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u>위원 5인 이상</u>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
<u> &lt;신 설&gt;</u>			<u>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u>

<신 설>

<신 설>

⑤ • ⑥ (생 략)

출된 안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있다.

⑦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 회의에 부치는 것이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된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사유에 대해 안건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 제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⑨·⑩ (현행 제5항 및 제6항

### <신 설>

과 같음)

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 반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평가 항목 및 기준
- 2. 평가 대상
- 3. 평가 방법
- 4. 평가 일정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 ③ (생 략) <신 설>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평가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